##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919

발의연월일: 2021. 6. 21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강득구 · 오영환

임종성 • 이용빈 • 문진석

김수흥 · 강병원 · 정일영

아수진॥・양정숙・김병기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,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.

특히,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 가 있음.

이에 한자어 표현인 "속행"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"계속 진행"으로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##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3제1항 본문·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속행"을 각각 "계속 진행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의3(행정제재처분 등의 효	제58조의3(행정제재처분 등의 효
과승계) ① 제11조의3제1항에	과승계)
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	
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	
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	
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	
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	
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	
부터 1년간, 제10조의4제4항에	
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	
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	
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	
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	
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	
등의 절차를 <u>속행</u> 할 수 있다.	<u>계속 진행</u>
다만,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	
병 시에 그 처분 등 또는 위반	
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	
분 등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	
하고 그 절차를 <u>속행</u> 할 수 없	<u>계속 진행</u> -
다.	
②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독립	2
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	

페업신고 전에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 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,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 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독립 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 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독립제 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.

	<u>계속 진</u>
<u>ऄ</u>	